

독일 특허 분쟁 관련 제도

1. 독일 특허 분쟁 관련 제도 일반

주요 내용	
법원(Source of Law)	국내법, 국제조약, 유럽 공동체법
관할권	i) 주 지방법원 ii) 주 고등법원 iii) 연방 대법원 iv) 연방 특허법원
구속력	선행 판결의 구속력 없으나, 상급심 법원의 판결을 따름
소송 당사자	특허권자, 전용 실시권자
소송 대리인	변호사, 특허 대리인(Patentechnsanwalt)
ADR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 화해, 중재, 조정 등
국제 재판 관할권	i) 국제재판관할 인정의 원칙 ii) 국제재판관할 인정의 예외 iii) 속지주의 원칙과 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 iv) 외국 지적재산권의 무효소송 v) 국가간 금지 명령(Cross border injunction)
소송 기간	i) 주 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 : 8-12 개월 ii) 주 고등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 : 9-12 개월 iii) 연방 대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 : 18-24 개월
소송비용	소송 가액에 따라 달라짐

2. 법원(Source of Law)

특허 등록 및 특허소송과 관련된 관련 입법으로는, 국내법, 국제 조약, 및 유럽 공동체법이 있으며, 국내법으로는 독일 특허법(Patentgesetz: PatentG)과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ZPO)이 있다. 또한, 국제 조약으로는 특허협력조약, 유럽특허조약, 및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있고, 유럽 공동체 법으로는 Council Directive 91/250 EEC, Directive 98/44/EC, Directive 2000/29/EC, Council Regulation 2001/44/EC, Council Regulation 2003/1383/EC, Directive 2004/48/EC 등이 있으며, 특히 이들 유럽 공동체법들은 최근 독일 특허법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3. 관할권

독일의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 및 각 주의 각급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재판권(Gerichtsbarkeit)의 영

법원		주요 내용
국내법	독일 특허법	특허성, 이의신청, 무효심판, 및 특허침해 판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특허 침해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국제조약	유럽특허조약	32개 회원국을 커버하는 유럽 특허 출원, 허여 절차 및 허여 후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TRIPs	유럽 연합내에서의 실시와 법원 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유럽 공동체법	Council Directive 91/250 EEC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Directive 98/44/EC	생물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
	Directive 2000/29/EC	저작권과 관련 권리간의 조화
	Council Regulation 2001/44/EC	민법 및 상법상 문제에 대한 재판 관할권 및 권리 행사
	Council Regulation 2003/1383/EC	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조치
	Directive 2004/48/EC	지적재산권의 권리행사

표 4-1 법원

역에 따라 일반법원, 특별법원, 및 기타 법원으로 구분된다. 특허 침해소송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일반 법원인 주 지방 법원 (Landesgericht), 주 고등 법원 (Oberlandesgericht), 및 연방 대법원(Bundesgerichtshof)이 가지며, 특허 무효소송 사건, 실용신안 무효소송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특허청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특별 법원인 연방 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 및 일반 법원인 연방 대법원이 가진다.

4. 법원 조직

독일에서의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소송과 특허 무효소송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화된 구조이다. 특허 침해소송은 주 지방법원에, 특허 무효소송은 연방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와는 달리, 특허 침해소송 사건의 피고가, 침해소송 법원에서 계쟁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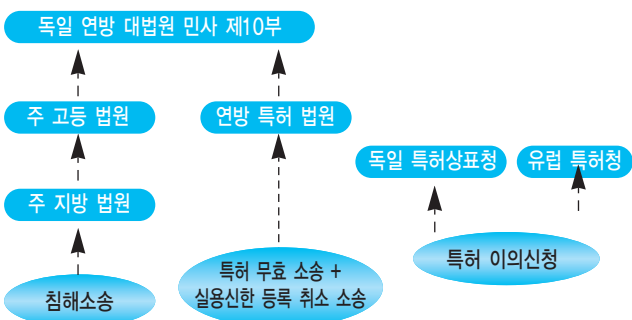


그림 4-1 독일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침해 및 무효소송 처리 절차

1) 주 지방법원(Landesgericht)

특허 침해소송의 제1심은 주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통상적으로 각 주마다 각각 1 곳의 법원이 집중하여 관할하지만, 뒤셀도르프, 뮌헨 등 복수개의 주의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도 있다. 특허 침해소송을 관할하는 주 지방법원에는 지적 재산권 전문 재판부 또는 집중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뒤셀도르프와 뮌헨의 주 지방법원은 지적 재산권을 전담하는 2개의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전담 재판부 또는 집중 재판부의 판사들은 기술 전문가가 아닌 법률가들이지만, 특허법에 대하여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 침해소송 사건은 법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된다.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1심 법원으로서, 125개의 지방법원들 중 12개의 주 지방법원에서 주로 특허 침해소송 사건을 심리한다. 이들, 12개의 지방법원은 뒤셀도르프(Düsseldorf), 뮌헨(Munich), 만하임(Manheim), 베를린(Berlin), 브라운스웨이그(Braunschweig), 에르푸르트(Erfurt),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함부르크(Hamburg), 라이프지히(Leipzig), 누렘베르그(Nuremberg), 마그데부르크(Magdeburg), 및 사르브뤼켄(Saarbrücken)이다.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가장 많은 특허 침해소송을 처리하며, 독일 전체 침해소송 건수의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¹⁾. 한편, 뒤셀도르프 법원과 함께 뮌헨과 만하임, 함부르크, 및 프랑크푸르트의 주 지방법원도 많은 수의 특허 침해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1심 법원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사업지 또는 침해 발생지의 주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대부분의 침해품들이 독일에서 팔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고는 12곳의 주 지방법원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요 법원	판결 경향 및 소송기간
뒤셀도르프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기간은 약 14개월 정도 소요됨
뮌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침해 선언을 구하는 경우 유리하고, 소송 절차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됨
만하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됨
프랑크푸르트	가처분 명령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움
함부르크	가처분 허여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침해 사실을 인지한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음

표 4-2 포럼 쇼핑(주요 법원의 판결 경향)

2) 주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2심 법원으로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12개의 주 고등법원이 존재한다. 12개의 주 고등법원은 뒤셀도르프(Düsseldorf), 뮌헨(Munich), 만하임(Manheim)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칼스루에(Karlsruhe), 베를린(Berlin), 브라운스웨이그(Braunschweig), 에르푸르트(Erfurt),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함부르크(Hamburg), 라이프치히(Leipzig), 누렘베르크(Nuremberg), 마그데부르크(Magdeburg), 및 사르브뤼켄(Saarbrücken) 법원이다.

주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은 원래 완전한 사실심 단계였지만, 2001년의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심리 범위의 제한이 가해졌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격 방어방법의 제출은 1심 법원에서의 불제출이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인정되게 되었다.

	주 지방법원	주 고등법원
특허소송 건수/2006년	약 600-700건	약 175건

표 4-3 독일 특허 침해소송 사건 건수²⁾³⁾

3) 연방 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

연방 대법원은 칼스루에(Karlsruhe)에 위치하고 있으며, 12개의 민사부와 5개의 형사부 및 8개의 특별부가 설치되어 있다. 각 민사 및 형사 재판부에는 평균적으로 7명의 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각 사건에 대한 심리는 5명의 판사(재판장 1명, 배석판사 4명)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특허 침해소송 사건은 민사 제10부에서 관할한다.

연방 대법원의 심리 제10부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침해소송 및 무효소송, 사정계 및 이의신청 사건의 상소 사건을 심리한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 제10부의 재판관은 지적재산법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며, 연방 대법원에서 제10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재판관은 대체로 주 지방법원의 주임 판사, 특허 사건을 심리하는 주 고등법원 또는 연방 특허법원의 주임 판사를 경험한 판사들이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특허법원의 특허 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해서는 '사실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경우, 연방 대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 및 증거 제공에 구속되지 않고,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실 및 증거를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연방 특허법원의 특허 무효소송 판결에 대한 상소 사건은 Patentrechtsanwalt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은 주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 및 연방 특허법원의 특허청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해서는 '법률심'으로서 기능한다. 연방 특허법원의 항고 소송 판결에 대한 상소는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상소제로서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법률문제를 판단해야 할 경우, 및 법률의 발전 또는 균일한 사법 실무 확립의 견지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법명특허 2008. 5

1) John J Allen and Charles Gielen, The Netherlands, European Lawyer Reference Series, 2006

2) Towards an enhanced patent litigation system and a community patent,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Brussels, 12 July 2007, 11622/07.

3) 독일 연방 특허법원의 약 200건의 무효소송 사건은 제외되었음.